A 타입 [사망보험금 최고 2,000 만엔]

2027년 4월 1일이후
보험적용개시용

(특약 있음/없음 겸용)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Gakkensai"

가입자 안내서

여러분 자신이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본 보험은 학생개인에 대해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을 대신해 이 책자를 소중히 보관하세요!



〈가입에 대한 이해〉 학생 본인이 기입해 주십시오.

가입 연도	년	보험 기간	년간	통학특약	접촉감염특약
				유 ・ 무	유 ・ 무
성명					

(주의) 1 통학 중의 사고・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보통보험]** 및 **[통학중등상해위험담보특약]** 에 가입하신 경우에 한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2 접촉감염에 따른 감염예방조치를 받았을 경우의 보험금은 **[학생교육연구재해해상보험 보통보험"Gakkensai"]** 및 **[접촉감염예방보험금 지급특약"Sesshokukansentokuyaku"]**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

JEES 公益財団法人　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
Japan Educational Exchanges and Services

가입자 여러분께

본 보험의 내용 및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이신 여러분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등의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안내서] 는 보험증권을 대신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꼭 읽어 보시고, 손이 닿는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목 차〉

Ⅰ.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개요 (P1 ~ P5)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2.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상해
3.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
4. 보험금 지급예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6. 계약 내용 변경 (전부・퇴학・휴학) 시 수속절차

Ⅱ. 사고 발생 시의 절차 (P6)

1. 사고의 통지
2. 보험금 청구 절차

Ⅲ. 중요사항설명서 (P7 ~ P8)

1. 계약개요
2. 주의환기정보

Ⅳ. 보험금청구처 (도쿄해상일동 담당 손해서비스과) (P8)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이하 '본 협회' 라고 합니다.)와 다음의 보험회사(예정)가 체결한 공동 보험계약이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가 다른 인수 보험회사의 대리・대행을 실시합니다. 각 인수회사는 계약체결 시 결정하는 인수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별개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집니다 . 인수 비율은 본 협회에 확인하십시오 .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포 손포재팬　도쿄해상일동(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Ⅰ.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개요

1. 본 보험의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
4월 입학생	4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의(*1)) 3월 31일 오후12시까지
9월 입학생	9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의(*1)) 8월 31일 오후12시까지
10월 입학생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의(*1)) 9월 30일 오후 12시까지

(＊1) 원칙으로는 졸업까지의 기간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 보험적용개시 시점 및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가입의 경우 (학교가 학생의 가입을 결정한 경우) 로 , 학교의 기관에서 결의(*2) 한보험가입일이 보험기간 개시시점 이후일 때 .	결의된 보험가입일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상기 표와 동일.
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가입을 결정한 경우) 로 , 학생이 재적한 회원 학교에 소정의보험료분담금 납부와 함께 신청한 날이 보험기간 개시이후일 때 .(*3)	신청한 날의 다음날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 보험적용종료 시점은 상기 표와 동일.

(＊2) 보험 가입일시가 결의된 일시보다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3) 원칙으로는 입학절차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입 형태 (전원 가입 또는 임의 가입) 나 자신의 보험기간을 모르는 경우는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

주의사항

(1) 4 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4 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합니다. 단, 4 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 : 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가입일이 4월 1일 이후일 때는 결의된 보험가입일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소정의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신청한 날이 4월 1일 이후일 때는 신청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2) 9 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9 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9 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이하와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 : 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 가입일이 9월 1일 이후일 때는 결의된 보험가입일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소정의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신청한 날이 9월 1일 이후일 때는 신청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3) 10 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10 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합니다. 단, 10 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 전원 가입의 경우: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가입일이 10월 1일 이후일 때는 결의된 보험가입일 오전 0시가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 임의 가입의 경우 :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소정의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신청한 날이 10월 1일 이후일 때는 신청일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보험적용개시 시점이 됩니다.

2. 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상해

(1)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보통보험 약관

피보험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가 재적한 학교의 국내외 교육연구활동 중에 발생한 **급작스러우면서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질병」은 본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의) 상해에는 다음에 나열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①신체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그리고 일시적으로 흡입 , 흡수 혹은 섭취한 경우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중독증상 (계속적인 흡입, 흡수 혹은 섭취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중독증상은 제외합니다.)

②일사 또는 열사에 의한 신체의 장해 .

[교육연구활동 중] 이란…

① 정규과정 중

강의, 실험, 실습, 연습 또는 실기에 의한 수업(이하 총칭하여「수업」이라고 합니다.)을 받고 있는 동안을 말하며, 다음에 나열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가. 지도교원의 지시에 따라 졸업 논문 연구 또는 학위 논문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단, 오로지 피보험자의 사적인 생활에 관련된 장소에서 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 지도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준비 또는 뒷정리를 하고 있는 동안이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학교의 도서관, 자료실 및 어학 학습 시설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다. 대학원 설치 기준 제15조, 대학 설치 기준 제28조 및 고등 전문학교 설치 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대학, 단기 대학 또는 고등

전문학교의 정규과정를 이수하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말하는「다른 대학, 단기 대학 또는 고등 전문학교」에는 외국의 대학, 단기 대학 등도 포함됩니다.

② 학교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학교가 주최하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③ ①②④이외의 학교 시설 내에 있는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내에 있는 동안. 단, 기숙사에 있는 동안, 학교가 금하는 시간 혹은장소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가 금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제외합니다.

④ 과외활동 (클럽활동) 중

학교의 규칙에 따른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교가 인정하는 학내 학생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문화활동 또는 체육활동을 하는 동안. 단, 산악 등반이나 행글라이더 등 위험한 스포츠를 행하는 동안, 학교가 금한 시간이나 장소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가 금한 행위를하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2) 통학중등상해위험담보특약 (통학특약)

학연재 보통보험 및 본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의 주거와 학교시설 간 왕복 중 또는 학교시설 간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① 통학중

학교 수업 등(*1), 학교 행사 또는 과외 활동(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학교가 금지한 방법 제외)(*2)에 따라, 피보험자의 거주지(근무지를 포함합니다)(*3)와 학교 시설 등(*4)(대지에 들어가기 전)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② 학교시설 등 (*4) 상호간의 이동중

학교의 수업 등(*1),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클럽활동)에 참가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학교가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2)에 의해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에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클럽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상호간을 이동하고 있는 동안.

(＊1)「학교의 수업 등」에 대해서는 P1 ～ 2의 정규과정 중 참조해 주십시오.

(＊2)「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학교가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이란 주거와 학교시설 등의 왕복이나 학교시설간을 이동함에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로 및 방법을 말합니다.

「 경로」에 대해서는 통학정기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로는 물론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용된다고 상정되는 경로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공공교통기관의 파업이나 도로봉쇄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우회하지 않을수 없는경우로서 그 우회로가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우회로도 합리적인 경로로 간주합니다.

경로의 일탈과 중단에 대해

원칙상으로 경로를 일탈한 경우 (수업 등의 참여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나 왕복・이동을 중단한 경우 (왕복・이동과는 관계없는 행위를 도중에 하는 경우) 에는 그 동안이나 그 후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일탈・중단이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 (클럽활동) 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기타 여기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위한 것일 경우, 또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사유로 행한 최소한의 것일 경우에는, 합리적 경로로 복귀한 후에 입은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은 행위입니다.

①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를 구입하다. ② 반찬 등을 구입하다. ③ 혼자 생활하는 학생이 식당에 들르다.
④ 선거의 투표를 하다. ⑤ 병원이나 진료소에 진찰을 받다.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철도, 버스 등 공용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나 자전거, 자동차, 도보의 경우 등 통상 사용되는 방법(학교가 금지하는 방법을 제외합니다.)이라면, 평소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3) 학생이 거주하며 일상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집과 같은 장소로, 학업의 거점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근무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장시간 통학이나 자연 재해, 교통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상의 주거 외의 장소에 숙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도 주거로 봅니다.

(＊4)「학교시설 등」이란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외에 수업 등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클럽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3) 접촉감염예방보험금 지급특약 (접촉감염특약)

학연재 보통보험 및 본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상실습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내에서 감염증의 병원체에 예기치않게 접촉하여 그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 일 이내에 그 접촉감염에 대한 감염예방조치를 받은 경우에 15,000 엔 (정액) 을 지급합니다 .

(주의)접촉감염 이외의 원내 감염 (공기감염 등) 은 이 특약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아래 표의 용어의 의미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용 어	정 의
①	접촉감염	임상실습의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직간접을 불문하고 감염증 (*5)병원체에 예기치 않게 접촉 (*6)한 것을 말합니다.
②	임상실습	병원 등 (*7)에서 행하는 실습을 말합니다.
③	감염증 예방조치	감염증에의 감염 또는 발병을 예방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검사, 투약 등을 말합니다. 단, 의사 등의 지시 혹은 지도에 따른 것에 한합니다.

(＊5)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1 항의 감염증을 말합니다 . 이하 본 특약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

(＊6) 접촉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7) 병원 또는 진료소 등을 말합니다 . 이하 본 특약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 6 조 (2023 년 6 월 7 일 현재)>

제6조 이 법률에서「감염증」이란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4류 감염증, 5류 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지정감염증 및 새로운 감염증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1류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1	에보라 출혈열
2	크리미아・콩고 출혈열
3	천연두
4	남미 출혈열
5	페스트
6	말부르그병
7	라사열

3 이 법률에서「2류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1	급성회백수염
2	결핵
3	디프테리아
4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병원체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속 SARS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한다.)
5	중동호흡기증후군 (병원체가 베타코로나바이러스속 MERS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에 한한다 .)
6	조류독감(병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속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로서 그 혈청 아형이 신종플루 등 감염증(제7항 제3호에 열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동항 제4호에 열거하는 재유행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제외한다. 제6항 제1호 및 제2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의 병원체로 변이할 우려가 높은 자의 혈청 아형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제5항 제7호에 대해서 '특정 조류독감'이라고 한다.)

4 이 법률에서「3류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

1	콜레라
2	세균성 이질
3	장관출혈성대장균 감염증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5 이 법률에서「4류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

1	E형 간염
2	A형 간염
3	황열
4	Q열
5	광견병
6	탄저
7	조류독감 (조류독감 을 제외한다 .)
8	보툴리누스증
9	말라리아
10	산토끼병
11	전 각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병으로서동물 또는 그 사체 , 음식물 , 의류, 침구, 기타 물건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고 , 전 각호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국민 건강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6 이 법률에서「5류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1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을 제외한다 .)
2	바이러스성 간염(E형 간염 및 A형 간염을 제외한다 .)
3	크림토스 포리디움증
4	후천성면역부전증후군
5	성기 크라미디아 감염증
6	매독
7	홍역
8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9	전 각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병(4류감염증을 제외한다 .) 으로서 , 전 각호에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

7 이 법률에서「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이란 다음에 제시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한다.

1	신종인플루엔자 (새롭게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바이러스를 병원체로 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해당 감염증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감염증의 전국적이고도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의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2	재유행형 인플루엔자 (과거에 세계적 규모로 유행한 인플루엔자로서 그 후에 유행하지 않고 장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이 재유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재의국민 대부분이 해당 감염증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감염증의 전국적이고도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의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새롭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된 코로나바이러스를 병원체로 하는 감염증으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해당 감염증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감염증의 전국적이고도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재유행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거에 세계적 규모로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를 병원체로 하는 감염증으로서 그 후에 유행하지 않고 장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이 재유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현재의 국민 대부분이 해당 감염증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감염증의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8 이 법률에서「지정감염증」이란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병(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3류 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을 제외한다.)으로서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으면 해당 질병의 만연에 의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9 이 법률에서「신감염증」이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병과 그 병상 또는치료 결과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해당 질병에 걸렸을 경우의 병상정도가 위독하고 , 또한 해당 질병의 만연에 의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생략 (제 10 항부터 제 24 항까지)

3.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

(1) 사망보험금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18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범위	보험금액
[정규과정 중] [학교행사중]	**2,000만엔**
[정규과정 중·학교행사중 이외에 학교시설내에 있는 동안] [과외활동(클럽활동)중] [특약가입자의 통학중 ·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 중]	**1,000만엔**

(2) 후유장해보험금 (*1)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180일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범위	보험금액
[정규과정 중] [학교행사중]	**정도에 따라 120만엔~ 3,000만엔**
[정규과정 중·학교행사증 이외에 학교시설내에 있는 동안] [과외활동(클럽활동)중] [특약가입자의 통학중 ·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 중]	**정도에 따라 60만엔~ 1,500만엔**

(*1)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사망보험금만 지급합니다.

(3) 의료보험금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및 입원가산금

사고발생 시 활동의 종류			치료일수(*2)	의료보험금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	1 일~ 3 일	**3,000엔**
			4 일~ 6 일	**6,000엔**
			7 일~ 13 일	**15,000엔**
(치료일수 1일 부터 대상)	(치료일수 4일 이상이 대상)	(치료일수 14일 이상이 대상)	14 일~ 29 일	**30,000엔**
			30 일~ 59 일	**50,000엔**
정규과정 중 · 학교행사 중	**· 정규과정 중, 학교 행사 중 및 과외 활동(클럽 활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학교 시설 내에 있는 동안 · 통학 특약 가입자의 통학 중 · 학교 시설 등 상호 간 이동 중**	**학교 시설 내외 를 불문한 과외 활동 (클럽활동)중**	60 일~ 89 일	**80,000엔**
			90 일~119 일	**110,000엔**
			120 일~149 일	**140,000엔**
			150 일~179 일	**170,000엔**
			180 일~269 일	**200,000엔**
			270 일~	**300,000엔**

입원한 경우

입원가산금(*3) (180일을 한도)
입원 1일당 4,000엔 (활동 유형에 관계없이 입원 1일째부터 지급됩니다 .

(*2) **실제로 입원 또는 통원한 일수를 말합니다.** 상해를 입고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 완료일' 사이의 실제 치료기간으로 **치료기간의 총 일수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십시오 .

(*3) 입원 가산금은 의료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첫날부터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1) 좌측에 기재된 보험금은 생명보험 , 건강보험 , 타 상해보험 , 가해자의 배상금과는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2) 보험금은 좌측에 기재된 금액에 한정되므로 2 개이상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
(3) 같은 날 중복하여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도 치료일수는 1 일이 됩니다 . 1 일 중 2 개의 병원에 통원하여도 치료일수는 2 일이 될 수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4) 접촉감염예방보험금(*4)

보상범위	지급보험금
임상실습 중	**한 사고당 15,000 엔 (정액 지급)**

(*4) 임상실습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감염증 병원체에 접촉한 경우 ,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감염 예방조치를 받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

4. 보험금 지급예

(1) 교육연구활동중

① 정규과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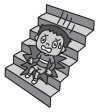
○실험중에 플라스크내를 교반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폭발하여 양쪽 눈에 화상을 입었다.
○조리실습중에 칼로 야채를 자르다가 잘못하여 왼손 검지를 베었다.
○폭천하에서 보육실습중에 열사병이 일어나 입원을 수반하는 치료를 받았다.

② 학교행사중



○졸업식 때 ,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경우.
○숙박연수지에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다.
○야구대회에서 심판을 보고 있던 중에 볼이 왼쪽 눈에 맞아타박상을 입었다.

③ ①②④이외의 학교 시설 내에 있는 동안



○학교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골절.
○학교의 교실내에서 책상을 뛰어넘다가 착지에 실패하여 왼발 엄지발가락을 골절.

④ 과외활동 (클럽활동) 중



○스키부 활동 중 , 경사면에서 굴러 골절한 경우.
○학외 구기장에서 럭비 공식시합중에 상대에게 태클을 당해 왼쪽 어깨쇄관절을 아탈구.

(2) 통학중 ·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중

① 통학중



○자전거로 통학중에 주차장에서 나온 자동차와 충돌 . 양무릎과 흉부를 타박.
○동결된 노면을 도보로 통학중에 미끄러져서 전도 . 두부좌상 · 타박.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로 통학중에 우회전하는 다른 모터사이클 (배기량 50cc 이하) 와 충돌하여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발목을 타박.

②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중



○학교에서 서클활동 장소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중에 자동차를 피하려 하다가 전도. 오른팔과 양다리에 타박 · 절상을 입었다 .

(3) 임상실습중의 접촉감염에 의한 감염증 예방조치



○정규수업에서 수술중에 집도의가 사용한 기구 의바늘이 왼손 중지에 찔려 감염증 예방조치를 받았다 .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부상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 보험금 수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보험자의 자살행위 · 범죄행위 · 투쟁행위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발생한 사고 , 뇌질환 · 질병 · 심신상실 , 임신 · 출산 · 조산 또는 유산 , 외과적 수술 등의 의료처치 (보험금 지급 대상의 부상 치료를 제외), 지진 · 분화또는 이들로 인한 쓰나미 (피보험자가 이들 자연현상 관측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 전쟁 · 내란 · 폭동 , 핵연료물질의 유해한특성 등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가 핵연료물질 , 핵연료물질로 인한 오염물 , 또는 이들을 사용하는 장치로 실시하는 연구 · 실험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 방사선조사 · 방사능오염 (피보험자가 방사선 또는 방사능 발생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연구 · 실험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 편타증후군 ,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소견이 없는 것 . 학교시설 외 과외활동으로 실시하는 산악등반 (피켈 등 등산용구 사용) · 루지 · 봅슬레이 · 스카이다이빙 · 행글라이더 탑승 등 위험한 운동 중 사고 , 학교시설 외 과외활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등 승용구를 사용한 경기 · 시운전 · 경기장 자유주행(*1), 피보험자에 대한 형 집행 등

음주로 인한 급성 알코올중독증과 시간 경과로 중대화한 상해 등 '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고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 상기 내용이 정규과정 중이나 학교행사 중에 발생한 경우 및 학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보상됩니다.

6. 계약 내용 변경(전부 • 퇴학 • 휴학) 시 수속절차

(1) 2년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가입하신 분은 다음의 경우에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 • 학생지원과 • 보건센터 등)에 통지해 주십시오.

① 주간부 , 야간부 또는 통신부의 구분을 변경했을 경우

가. 야간부에서 주간부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를 미경과 연도에 따라 청구합니다.

나. 주간부에서 야간부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를 미경과 연도에 따라 일부 반환합니다.(*1)

단 , 학년도의 도중에 주간부 , 야간부 또는 통신부의 구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학년도의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반환 또는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

② 퇴학했을 경우(제적, 사망을 포함합니다.)

상기 ①나.에 준하여 보험료를 미경과 연도에 따라 일부 반환합니다.(*1)

단 , 학년도의 도중에 퇴학한 경우에는 그 학년도의 보험료 차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통산 **1년 이상** 휴학했을 경우

휴학 기간 종료 후, 휴학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합니다.(*1)

④ 학부, 학과 등을 변경할 경우

(2) 휴학 , 유급 등을 이유로 소정의 수업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보험계약 종료시에 새로 추가가입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 소정의 보험료를 첨부하여 (*2) 학교에 신청해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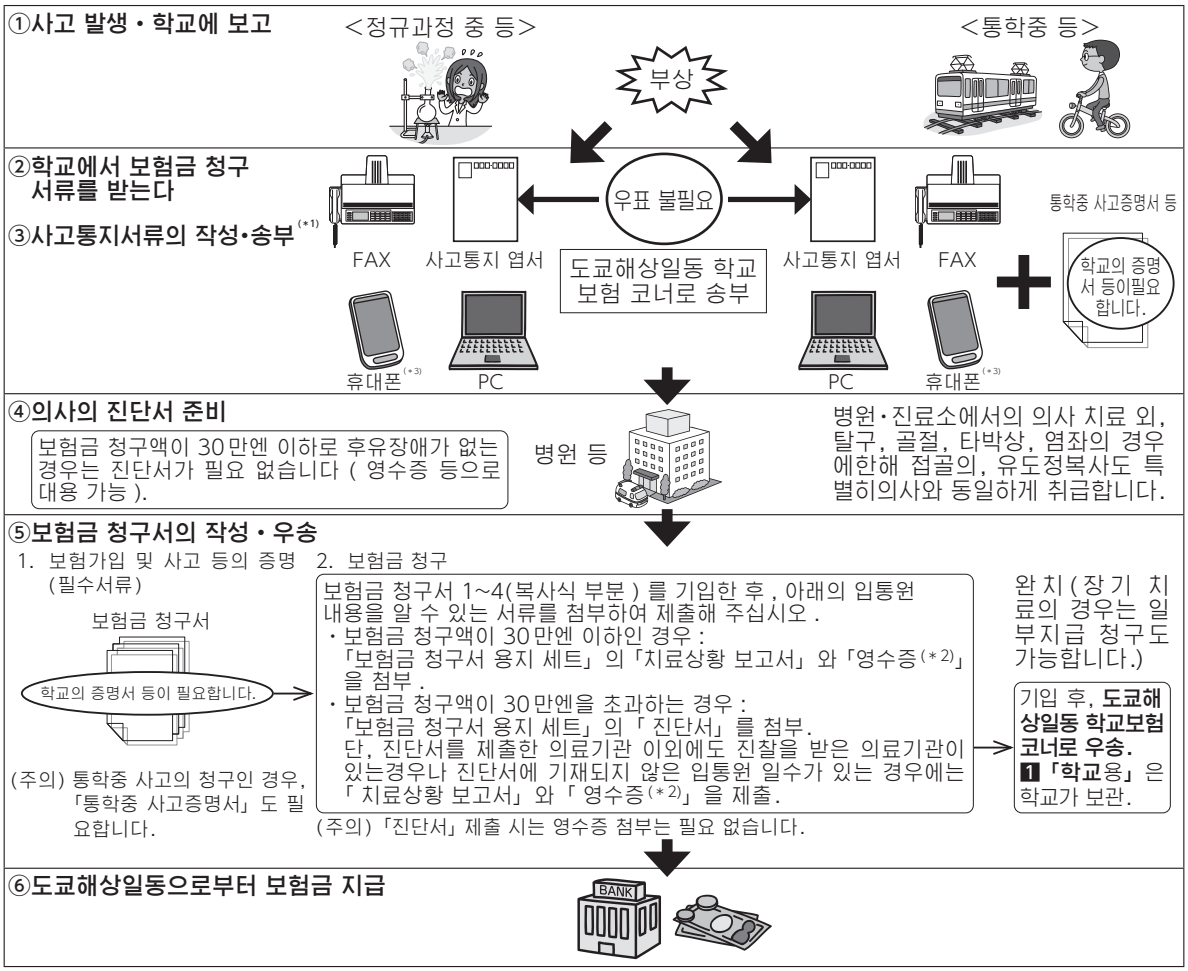
(* 1) 보험료 반환에 따른 송금 수수료는 피보험자의 부담입니다.

(* 2) 보험료 지급방법은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 · 학생지원과 · 보건센터 등) 에 문의해 주십시오 .

II. 사고 발생 시의 절차

〈사고발생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주의) SkettBook(Gakkensai 공식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Gakkensai 공식 앱 버전 가입자 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사고통지서류의 작성・송부방법은 학교마다 다르므로사전에 학교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사고통지 시스템 (휴대폰용) QR코드

(사고통지시스템톱 페이지)

(＊2)
입통원 기간이 기재된 것.없는 경우에는 진찰권 의사본을 첨부하거나「 치료상황 보고서」에 의료기관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사고의 통지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사고 일시, 장소, 상황, 상해 정도를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신고한 후, 그 창구에 비치된 사고통지 엽서 또는 FAX, 혹은 PC나 휴대 단말을 이용한「사고통지 시스템」으로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 코너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주의)보험금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의 경우는 상기 사고통지와 함께 다음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 코너에 제출하십시오.

- **통학중의 사고 : 통학중사고증명서**
- **학교시설 등 상호간 이동중의 사고 : 시설간이동중사고증명서**
- **접촉감염특약에 관한 사고의 경우 : 접촉감염 사고증명서**

(주의)사고통지 엽서 및 통학중 사고증명서 , 시설간 이동중 사고증명서는 학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주의)사고 통지 및 보험금 청구는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 코너로 하여 주십시오(P8, 보험금 청구처 참조).

2.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1)이 아래의 서류를 도쿄해상일동의 학교보험 코너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보험금 청구서 (학교의 증명이 완료된 것 . 기타 사고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②의사의 진단서

단, 보험금의 청구금액이 30만엔 이하(다른 상해보험 등과 합산하여 30만엔 이하인 경우)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자 본인이 치료상황 보고서에 기입하고 영수증(통원일수가 명기되어 있는 것.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진찰권 사본 등)을 붙여서 제출하면 의사의 진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③기타(보통보험약관 제25조・통학중등상해위험 담보특약 제4조・접촉감염예방보험금 지급특약 제3조를 참조하십시오.)

(＊1) 피보험자가 미성년의 경우, 보험금 청구는 원칙상 친권자가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원칙상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의)입원 시에는 입원일수등을 기재한 병원 등의 증명서류 (영수서류에 기재해도 무방) 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의)앞에서 기술한 ① 및 ②의 서류는 학교에 구비된 소정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

(주의)보험금은 원칙상 은행 계좌이체에 의해 지급.

(중요) 보험금 지급후에 인수보험회사는 본 협회에 보험금지급 연락을 하고, 본 협회는 그것을 기초로 보험금지급 보고서를 학교에 송부하여 인수보험회사, 학교 및 본 협회의 3자가 그 사고의 보험금지급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므로 미리 양지해 주십시오.

III. 중요사항설명서

계약개요・주의환기 정보의 설명
・계약개요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 내용의 이해를 돕기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주의환기정보는, 가입하신 학생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가입하시는 보험에 관한 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험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 약관 등에 따르지만, 불명확한점 등에 대해서는 재적하는 학교의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문의하십시오.
(주의)이 팸플릿 및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약칭 [Gakkensai])안내] 등 가입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개요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조건 등

(1) 상품의 구조

본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고 동 협회의 찬조회원 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피보험자(보상을받을 수 있는 분)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동 협회가 소유합니다.

(2) 보상의 내용・보험기간 (보험의 계약기간)

①보험금을 지급할 주된 경우, 지급할 보험금, ②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③보험기간 등에 대해서는 P1 ～ P5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인수조건 (보험금액 등)

본 보험의 인수조건(보험금액 등)은 사전에 정해진 계약 코스 중에서 선택하시게 됩니다. 계약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4를 확인하십시오.

2. 보험료

보험료는 가입하신 보험료 적용구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

본 보험에는 만기환급금・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2. 주의환기정보

1. 고지 의무 등

가입 시 인수 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 (*1)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시 기재사항이 빠져있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계약이 해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대학집계보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1) 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 가입 후의 유의사항 (통지 의무 등)

○퇴학 등의 경우 통지의무와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P5 ～ P6을 참고하십시오. 통지와 절차 등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가입이 해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이 경우에는 집계보고서 등에 기재된 통지사항에 내용 변경이 생겼을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 산출한 보험료를 청구 또는 반환합니다.

3. 보험 개시일

P1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등

P5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5. 보험회사 파탄시의 취급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 파탄한 경우에 본 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 의 보상 대상이 되며, 보험금, 반환금 등은 일정비율까지는 동기구에서 보상을 합니다. 동 기구의 보상비율은 이하와 같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원칙으로는 80% (파탄 보험회사의 지급정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보험기간이 1년이상의 경우…원칙으로는 90% (보험기간이 5년이상으로 인수보험회사의경영이 파탄한 시점에서 보험료 등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이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이율을 과거 5 년간 항상 초과했을 경우는 90% 를 넘지 않습니다.)

6. 공동보험에 대하여

공동보험에 대해서는 표지 뒷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7.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가입자의 성명・학적번호・입금일 등의 개인정보를 인수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인수보험회사 및 인수보험회사 그룹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인수 판단, 본 계약의 관리와 이행, 부대 서비스 제공, 타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각종 상품・서비스 안내 및 제공, 설문조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아래 ①~⑥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등 특별한 비공개 정보 (민감 정보) 의 이용 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처 (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②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할 때 참고로 타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도쿄해상그룹 각사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제휴 기업 간의 상품・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재보험계약 체결, 갱신・관리,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⑤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무 절차 및 담보권 관리・행사를 위해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갱신 계약에 관한 보험 인수의 판단 등, 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등 (과거의 정보 포함) 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홈페이지와 타 인수보험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
개인정보는 소속 학교가 작성한 가입자 명부를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에 제출함으로써 제공됩니다. 이 취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8.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한 해약

피보험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그 피보험자와 관련된 가입을 해약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가입자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될 가족 등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9. 대리인으로부터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보험금 지급을받아야 할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가족 중에서 인수보험회사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세한 것은 이「가입자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본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 가입 취소・무효・중대 사유로 인한 해제

○가입 시에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 또는 강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은 그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입은 무효가 됩니다 .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할 목적 또는 타인에게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시킬 목적을 가진 경우
・사망 보험금 수취인을 지정할 때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는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 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목적으로 손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자 ,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이 폭력단 관계자 ,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나 보험금수취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ADR 센터(지정 분쟁해결기관)
보험에 관한 의견・상담은 (주의) 가입 상황・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 창구로 연락해 주십시오. (인수 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간사 보험회사) 공무제2부 문교공무 우편번호 102-8014 도쿄토 지요다쿠 산방쵸 6번지 4 0120-587-050(수신자 부담 전화) **사고의 연락・상담은**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0120-868-066(수신자 부담 전화)** (주의) 학교보험코너에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별 담당 학교보험코너에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시간 : 9:00 ~17:00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금융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 분쟁 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절차 실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과 문제를 해결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분쟁해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onpo.or.jp/) **03-4332-5241 (전국 공통)** 접수 시간: 9:15 ~ 17:00 (토・일・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IV. 보험금청구처 (도쿄해상일동담당손해서비스과)

도쿄해상일동사업부 (학교보험코너)	사 업 소 소 재 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 웰니스 보험금 서포트부 상해보험 서포트실 상해보험 서포트 제3팀(학교보험코너) 수신자부담 전화 0120-868-066	(우)105-8551 도쿄도 미나토구 니시신바시 3-9-4 도라노몬 도쿄해상일동빌딩

가입 내용・가입 확인・제반 절차 등에 관해 궁금한 점이있으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창구 (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 에 문의해 주십시오.

발행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학생지원부 학생보험과
우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TEL：03-5454-5275
https://www.jees.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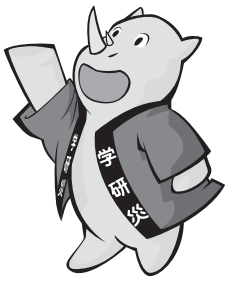
2026 년 10 월 작성

부상 등을 입었을 경우는 …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아래 순서로 수속하세요 !



☑ 사고를 학교에 보고하고 보험회사(도쿄해상일동)에 사고통지 수단을 확인

▼

☑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도쿄)에 사고통지 엽서(우표 불필요)・SkettBook(＊1)・휴대전화・PC・FAX 등을 이용해 사고를 통지

(＊1) SkettBook은 학교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고통지시스템 홈페이지)

▼

☑ 통원 중에 받은 영수증 등을 보관

▼

☑ 학교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입수

▼

☑ 치료 완료 후 보험금 청구서(학교에서 증명란에 기재한 것)를 도쿄해상일동 학교보험코너(도쿄)에 송부

(주의) 송부처는 P8 을 참조하십시오.

▼

☑ 도쿄해상일동이 보험금을 지급